

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5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적용을 통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
-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 신설)
- 나.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3 신설)

다.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4 신설)

라.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5 신설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10 ~ 5. 17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5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적용범위)”를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”을 “다른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)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
3.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협약 적정성
4.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·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
5.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·노동조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조의3(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·실·

과·소장으로 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,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

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

4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
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의4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(이하 “자문 등”이라 한다)를 한 경우
4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
5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6.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5조의5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3. 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5. 사망·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6.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11조제1항 중 “**한다.**”를 “**한다**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“**위원회**””를 ““**심의위원회**”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위원회**”를 각각 “**심의위원회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**위원회**”를 각각 “**심의위원회**”로 한다.

라.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

제16조제1항 중 “**한다.**”를 “**한다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해서는 <u>법령에서 정한 것</u> <u>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</u> <u>한 사항</u>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 다. <u><신 설></u>	제3조(<u>다른 조례와의 관계</u>) ---- 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 ----- --. 제5조의2(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 치)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<u>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</u> <u>여 담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</u> <u>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</u> <u>둔다.</u> ② <u>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</u> <u>사항을 심의한다.</u> 1. <u>민간위탁 계획의 수립·변경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2. <u>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</u> <u>성과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</u> 3. <u>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</u> <u>기관과의 재협약 적정성</u> 4. <u>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</u> <u>· 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</u> <u>한 사항</u> 5. <u>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·노</u> <u>동조건에 관한 사항</u>

<신 설>

6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조의3(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·실·과·소장으로 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,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

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

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
추천하는 사람

4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
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
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
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
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
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
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
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
로 의결한다.

⑥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
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
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팀장으로
한다.

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
에게는 「담양군 각종 위원회
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
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
있다.

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
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

<신 설>

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의4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(이하 “자문 등”이라 한다)를 한 경우
4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
5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

<신 설>

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
있던 경우

6.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
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
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
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
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
할 수 있고, 관리위원회는 의결
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
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
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
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
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
여야 한다.

제5조의5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
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
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
경우
3. 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
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
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

제11조(이의신청)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법인·단체 등(“신청인”이라 한다.)은 같은 조 제3항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12조(선정심의위원회) ① 군수는 수탁기관(재협약의 경우는 제외한다)의 공정하고 효율적 선정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 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,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

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
5. 사망·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6.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11조(이의신청) ① -----

----- 한다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선정심의위원회) ① ----

----- “심
의위원회”----- 심
의위원회-----

체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,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위원은 군수가 해당 위탁사무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(性別)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

마. (생략)

3.·4. (생략)

③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처음 소집은 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.

-----.

② 심의회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

마. (현행과 같음)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③ 심의회-----

-----.

-----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2. (생략)

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16조(이용료 징수 등)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에게 징수하는 이용료, 수수료, 그 밖의 비용 등(이하 “수입금”이라 한다.)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이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③ (생략)

④ 심의위원회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심의위원회-----

-----.

제16조(이용료 징수 등) ① -----

----- 한다-----
-----.

② ③ (현행과 같음)